

2008년도 [2회추경]

제 1 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 계	942,113,189	28,263,396
일반회계	644,710,520	19,341,316
특별회계	297,402,669	8,922,081
공기업특별회계	30,803,052	924,0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803,052	924,092
기타특별회계	266,599,617	7,997,9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290,061	578,702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88,441,289	2,653,23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34,989	127,05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85,884	23,577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7,743	8,032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06,900,187	3,207,006
주택사업특별회계	1,949,142	58,4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39,034	19,171
경영사업특별회계	315,634	9,469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6,798,751	203,963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0,402	4,212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32,878,577	986,357
주차장특별회계	3,957,924	118,738

제 2 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7,768,93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한다.

1. 총액인건비
2. 지방채상환 원리금

제 6 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

제 7 조 : 2008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부서변동) 사항은 승인받은것으로 간주하고, 부서가 상이할시 수정·보완 할 수 있다.